



하나은행 ISA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고위험_밸런스)

일련번호(년월회차):2024-04-3

|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다소높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본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투자자와 은행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전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의 내용 및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사전에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델포트폴리오명 하나 일임형ISA 고위험(밸런스)

| | | | | | |
|-------------------|--------|------------|-----------|---------|-----------------------------------|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예금·적금 | 예금자 보호:대상 | 원금 보장:보장 | 수수료:미발생 | 유의사항: 원금과약정이자지급. 원금손실위험 미발생 |
| | 일임형ISA | 예금자 보호:비대상 | 원금 보장:비보장 | 수수료:발생 | 유의사항: 실적배당(이익 또는 손실)지급. 원금손실위험 발생 |

신탁형ISA는 예금,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상품 중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지정 운용하며, 일임형ISA는 투자자가 은행에 투자를 일임하며, 대부분 집합투자증권(펀드)을 담아서 운용합니다.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본 모델포트폴리오 내 편입된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 | |
|------|--------------------|-----------|--------------|
| 위험등급 | 다소높은위험 (6등급 중 3등급) | 적합 투자자 성향 |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

①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산정 방식 : 각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음

② 편입 금융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 구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 위험등급 | 1 | 2 | 3 | 4 | 5 | 6 |
| 위험도 | 6 | 5 | 4 | 3 | 2 | 1 |

③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가중평균)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기준

| 구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 위험도 점수 | 5.4초과~6.0이하 | 4.4초과~5.4이하 | 3.3초과~4.4이하 | 2.3초과~3.3이하 | 1.3초과~2.3이하 | 1.0이상~1.3이하 |

(예시) 해외주식형펀드 40% × 5 + 해외채권형펀드 15% × 2 + 대안/혼합형펀드 20% × 5 + 국내채권형펀드 20% × 2 + 유동성 5% × 1 = **3.75(고위험)**

④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상품 편입 시 핵심위험

| 금융상품구분 | 핵심위험 |
|-----------|--|
| 국내주식형 | ① 자산가격변동 ② 거래량 부족시 가격하락 위험 |
| 해외주식형/채권형 | ①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상황 ② 환율변동 위험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
| 대안형 | ① 파생상품의 높은 변동성 ②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

|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위험등급 | 위험도 점수 | 위험자산비중 (12등급 합) | 유의 사항 | 적합 투자자 성향 | 모델포트폴리오 구분 |
|-----------------|--------------|--------------|-----------------|---|-----------|-------------------------|
|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5.4초과 ~6.0이하 | 90%이상 |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위해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공격투자형 | ·최고위험 밸런스 ·SI 최고위험 |
| | 높은위험 (2등급) | 4.4초과 ~5.4이하 | 90%이내 |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위해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 |
|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3.3초과 ~4.4이하 | 80%이내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적극투자형 | ·고위험 포커스/밸런스 ·SI 고위험 |
| | 보통위험 (4등급) | 2.3초과 ~3.3이하 | 40% 수준 | 투자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위험중립형 | ·중위험 포커스/밸런스 ·SI 중위험 |
| | 낮은위험 (5등급) | 1.3초과 ~2.3이하 | 20% 수준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안정추구형 | ·저위험 포커스/밸런스 ·SI 저위험 |
|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1.0이상 ~1.3이하 | 0%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안정형 | ·최저위험 |

포커스/밸런스/SI 운용방식의 차이

포커스 : 국내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해외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절세 효과 확대
 밸런스 : 국내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균형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분산투자 효과 제고
 SI : 시알고리즘 자산배분 모형으로 생성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

하나은행 ISA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고위험_밸런스)

일련번호(년월회차):2024-04-3

| 모델포트폴리오명 | 하나 일임형ISA 고위험(밸런스) | | | | |
|---|--|-------------------|-------------|--------------------------------------|---|
| 민원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및 홈페이지 (www.kebhana.com) 를 통해 문의가능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주요상담사례 | ① 부적격 해지 : 직전 3개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연장)불가로 국세청 부적격 통지된 경우 계약 해지 ② 지급(해지)기간 : 신청일로부터 5~16영업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오니 필요자금은 사전 신청바랍니다. ③ 원금손실가능성 : 최저위험(6등급) 등 위험도가 낮은 상품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
| 주요특성 | 원금보존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 국내주식형펀드를 포함 | | | | |
| 운용전략 | 위험자산 80% 이내에서 국내주식형펀드 상품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으로 고수익 추구 | | | | |
| 투자대상자산 (상품의 내용·구조) | 구분 | 위험등급 | 위험도 | 비중 | 편입자산 특성 |
| | 국내주식형 펀드 | 높은위험 | 5 | 13% |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되는 펀드 또는 ETF |
| | 해외주식형 펀드 | 매우높은위험 | 6 | 7% | 해외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되는 펀드 또는 ETF |
| | | 높은위험 | 5 | 37% | |
| | 국내채권형 펀드 | 낮은위험 | 2 | 8% |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되는 펀드 또는 ETF |
| | 해외채권형 펀드 | 보통위험 | 3 | 10% | 해외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되는 펀드 또는 ETF |
| | | 높은위험 | 5 | 8% | |
| | | 보통위험 | 3 | 5% | |
| 대안/혼합형 펀드 | 보통위험 | 3 | 5% | 절대수익추구/혼합/구조화형 및 인자채에 투자되는 펀드 또는 ETF | |
| | 낮은위험 | 2 | 7% | | |
| 유동성 | 매우낮은위험 | 1 | 5% | MMF 및 RP 등 단기금융투자상품 | |
| 시장상황에 따라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변경 가능 | | | | | |
| 위험자산(1등급 + 2등급 + 3등급 합) 비중 | 65% | |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 4.12 | |
| 수수료 | ① 투자일임수수료 : 연 0.5% 분기 후취 (온라인 연 0.4%) - 수수료 면제 : 분기말 및 (중도)해지시 수수료 차감한 평균금액이 투자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 수수료 면제 ※편입되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은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없는 클래스만을 편입하며, 운용보수,수탁보수 등은 펀드의 기준가격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펀드 내에서 부과됨 · 집합투자증권(펀드) 수수료 | | | | |
|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 0% | 운용보수 | 연 0.100%~연 0.900% | |
| | 사무관리보수 | 연 0.012%~연 0.025% | 수탁보수 | 연 0.015%~연 0.060% | |
| | ※ 실제 편입되는 펀드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펀드의 설명서 참조 | | | | |
| ②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중도인출,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또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조정) 실행시 편입 금융상품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금융상품의 설명서 참조 | | | |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원단위) | | | | |
| 계약기간 | 최초 가입 시 3년 이상 ~ 5년 이하, 연장 시 1년 이상 ~ 5년 이하 | | | | |
| 환매·매매 | - 편입되는 금융상품에 따라 매입·매도 결제 기간이 상이하며, 가장 긴 결제기간이 소요되는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매입·매도 기간 소요 - 편입 금융상품의 매입·매도 전 투자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고 다음 영업일에 매매 수행 | | | | |
| 기대수익 | - 투자일임 운용의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대상자산과 향후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이익·손실이 결정되므로 기대수익 제시 불가능함 - 기대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 | |
|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 | ① 은행의 본사에서 투자를 일임 운용하며,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투자자산의 비중과 편입 금융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변경될 수 있음 ② 은행은 최소 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여부를 검토함. 단, 금융시장 및 자산가격 급변 등 필요한 경우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함 | | | | |



모델포트폴리오명 하나 일임형ISA 고위험(밸런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보유 시 세제혜택(비과세, 분리과세 등)이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유형별 세제혜택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 만 15세이상 ~만 19세미만 거주자 | | 농어민 |
|-------------|---|--|-----------------------|-----------------------|---|
|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
| 가입대상 | ※서민형 소득 기준 초과자 |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없는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직전년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세액공제 |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 | | | |
| 납입한도 | 총 1억원(기 가입한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하 단,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하이고, 미불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입금 가능 | | | | |
| 중도인출 | 가능(단, 납입원금 범위 내) | | | | |
| 의무보유기간 | 3년 이상 보유 시 세제혜택 적용 | | | | |
| 가입·연장 제출 서류 | -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 ·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ISA 세제혜택 요건

① 계약의 해지와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 만료일에 투자자의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계좌 내 모든 자산을 매도하며, 실제 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모든 자산이 매도되어 현금화된 시점 이후에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원천징수 후 연결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계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해지시 매도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신청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과세에 관한 사항

-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계약을 해지(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별 매도에 따른 손실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장)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14일내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최종 부적격 판정 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③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 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④ 기타사항

- 입금, 중도인출, 해지(중도·만기해지 포함)의 신청(거래)일과 편입된 금융상품의 결제기간이 상이하여 가치 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금액보다 실제 결제금액이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서, 약관, 계약권유문서 및 부속 별지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중도)해지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하나은행 ISA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고위험_밸런스)

일련번호(년월회차):2024-04-3

모델포트폴리오명 하나 일임형ISA 고위험(밸런스)

| | | | | |
|--|---|--|--------------------|----------------|
| 주요 투자 손실 위험 및 유의사항 | 원금손실 가능성 |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 금융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투자대상 집중 위험 | 특정 지역 및 섹터에 대한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당 지역 및 섹터의 성과가 모델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
| | 상품 집중 위험 | 특정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
| | 환율변동 위험 | 해외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만기 불일치 위험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성향 불일치 위험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습니다. | | |
| | 기타손실발생 상황및최대손실 | 각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고유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투자원금 전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유동성 위험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 | 해당사항 없음 | 편입상품에 따라 발생 가능 | 해당 |
| 운용방법 변경의 요구 |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나 투자자의 성향 및 투자대상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릅니다. | | | |
| <p>① 편입되는 집합투자증권(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운용성과가 벤치마크 대비 부진할 수 있습니다.</p> <p>② 각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고유 투자 위험은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개별 약관(규약) 등에 따라 거래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③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 | | | |

| | | |
|---------|-----------------|---|
| 권리보호 안내 | 위법계약 해지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는 ‘위법사실발안날로부터 1년’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청약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 | 숙려 제도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한하여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 | 자료열람요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해피콜 | 신규일 익영업일부터 투자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해피콜(상품이해 확인콜)을 실시합니다. |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가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동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계약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었습니다.
※ 이 상품은 하나은행 투자상품본부에서 판매를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 | | | |
|----------|--|-----|-------|------|
| 설명직원 작성란 |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 월 | 일 | 하나은행 |
| | 직위 | 직원명 | 인(서명) | 연락처 |
| | | | | 지점 |